

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.

발의자 : 이광희 · 김문수 · 이재강  
김우영 · 민병덕 · 임미애  
이재관 · 박홍배 · 양부남  
이해식 · 김상욱 · 문금주  
이강일 · 김윤 · 박지원  
이상식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,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 · 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.

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, 학술 목적,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 · 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(안 제59조의3제4항).

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“제3자는”을 “제3자, 또는 권리구제 · 학술연구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3자는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